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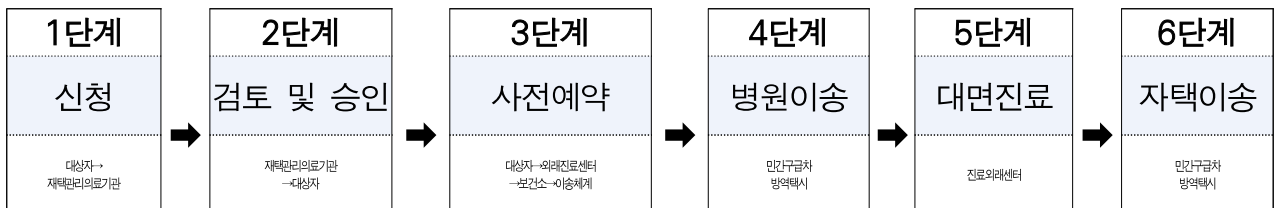
1 코로나 외래진료센터 설치·운영 예비비 사용 보고

□ 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43조(예비비)
-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
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
 -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사용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보고

□ 사업개요

- (사 업 명) 서울시 코로나 외래진료센터 운영
- (대 상 자) 재택치료자 유증상자
- (내 용) 코로나19 확진자 유증상자 외래 대면진료시스템 구축
 - 산소포화도 및 x-ray 검사, 약 처방, 코로나 항체치료제(렉키로나주) 처방
- (운영방법) 사전예약제 운영
- (운영프로세스)



- (인 력) 의사, 간호사, 행정인력 등 필수 전담인력을 기본으로 하되 의료기관별 자율추진
- (시설 및 장비) 음압 진료실, 검사실(혈액, x-ray), 수액실(렉키로나주) 필수
- (예 산) 진료수가 기본으로 하되 센터 인력, 운영비 등은 서울시 일부지원

□ 예비비 사용 사유

- '21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재택치료가 확대 운영되고, 재택치료자의 외래진료시스템 필요성이 제기되어 '21.12월 중 외래진료센터 긴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급재원 확보 필요
 - 12월 중 권역별 8개소 설치 및 운영개시하기 위해서는 긴급히 예비비 사용 필요

□ 예비비 사용 내역

- 예비비 사용 승인액 : 총 615,250천원
 - 의료기관(외래진료센터) 설치 운영 지원(민간경상사업보조): 365,250천원
 - 자치구 보건소 환자 이송비 지원(자치단체경상보조금): 250,000천원

○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('21.12.15.)

(단위 : 천원)

부서	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예산과목		예산 현액	사용승인액		승인 후 예산현액
			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
예산 담당관	예비비 (예비비)	예비비 (예비비)	예비비	예비비 (801)	재해·재난 목적 예비비 (02)	19,394,000	-	615,250	18,778,750
보건의료 정책과	공공보건·의료 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	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	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	민간이전 (307)	민간경상 사업보조 (02)	75,000	365,250	-	440,250
				자치단체 등 이전 (308)	자치단체 경상보조금 (01)	500,000	250,000	-	750,000